

의안번호	2218157
의 퇴 인	박정현의원
회 답 일	2026.7.9.
추계번호	26D1971
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4조의2제2항 (양로 및 요양지원) 신설	국가는 보훈보상대상자로서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23조 제1항제1호(재가급여) 또는 제2호(시설급여)를 받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부담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54조의2제2항 (양로 및 요양지원) 신설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재가급여 · 시설급여 이용에 따른 비용 지원(안 제54조의2제2항 신설)
- 개정안은 국가가 보훈보상대상자로서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23조제1항 제1호(재가급여) 또는 제2호(시설급여)¹⁾를 받는 사람에게 본인부담비용의

1)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23조(장기요양급여의 종류) ①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재가급여

- 가. 방문요양 :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
- 나. 방문목욕 :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
- 다. 방문간호 :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,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(이하 "방문간호지시서"라 한다)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, 진료의 보조,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

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추가재정소요 예상

- 현행법은 국가가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인 보훈보상대상자 중 무의탁 등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(제54조의2제1항)
- 개정안은 보훈보상대상자가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이용 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

○ 다만,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보훈보상대상자 중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른 등급판정을 받아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인원, 재가급여 등 요양급여별 생활수준을 고려한 1인당 보조비용 등이 필요하나 이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

- 참고로, 2026년 5월 말 기준 보훈보상대상자는 총 9,478명(국가보훈부 자료)
- 이와 별도로 국가유공자는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²⁾를 받고 있으나 평균 연령 등 인적 특징이 보훈보상대상자와 차이가 커 유사사례로 보기 어려움

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

라. 주·야간보호 :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·향상을 위한 교육·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

마. 단기보호 :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·향상을 위한 교육·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

바. 기타재가급여 : 수급자의 일상생활·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·향상에 필요한 용구(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)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
2. 시설급여 :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·향상을 위한 교육·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

2) 생활이 어려운 고령 국가유공자 등과 유·가족이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지급대상별 보조비율(40%·60%·80%) 차등 적용하여 지원하고 있음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이미연	김안나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미연	02-6788-4661	mylee@nabo.go.kr